

<표 1> 공고의 대부대상사업의 추이

	사업명	개시년도
1	수도사업	1957년
2	공업용수사업	1957년(수도사업에서 분리독립)
3	교통사업	1957년(1970년도에 고속철도가 추가)
4	전기사업	1957년
5	가스사업	1957년
6	항만정비사업	1957년(1963년 저수장이 추가)
7	병원사업	1957년
8	시장사업	1957년
9	도축사업	1957년
10	관광시설사업	1957년
11	유료도로사업	1967년(관광시설사업에서 분리독립)
12	주차장사업	1967년
13	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조성사업중 임해 공업요지 기타 임해부의 토지조성사업, 기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행해지 는 택지조성사업	1959년(수개의 관련사업이 추가)
14	공공하수도사업 및 유역하수도사업	1960년(1975년 유역하수도사업이 추가)
15	시가지재개발사업	1971년
16	공영주택사업	1977년
17	산업폐기물처리사업	1977년
18	임시지방도로정비사업	1978년
19	임시하천정비사업	1978년
20	임시고등학교정비사업	1978년

업으로 확대되었다. 또한 각 자치단체가 행한 공고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고요금대책을 위한 상수도사업등에 보다 저리이면서 장기자금으로 차환이 1967년도부터 인정되고 있다.

게다가 1971년부터는 새로이 지방도로공사가 행하는 유료도로사업 및 토지개발공사가 행하는 항만정비사업, 공업

용지 및 유통업무단지조성사업등에 대해서도 대부를 행하고 있다.

또한 매년도 실시하고 있는 대부외에 적자 공기업의 재정재건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1966년과 1967년에 적자지방공영기업의 이른바 재정재건체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1973년에 공영교통재건체, 1974년에 공립